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단1466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2. 접수 제319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2450호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 소를 가리켜 ‘이 사건 물품대금 소’라 한다), 위 법원은 ‘원고가 소외 C(상호: D)에게 2019. 11. 1.부터 2021. 5. 14.까지 345,593,241원 상당의 건축용 단열재를 공급한 후 그 물품대금 중 90,724,7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2022.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2. 9. 2. 확정되었다.

1. 소외 C은 원고에게 88,96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소외 C은 위 결정 직후인 2022. 8. 19. 여동생인 피고와,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8. 22.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리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소외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C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및 소외 C의 모인 소외 E의 소유이고, △현재도 소외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 10여 만 원을 직접 수령하고, 내부 수리도 직접 진행하고, 재산세도 직접 납부하고 있고, △피고는 노후화된 지하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 소득 등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소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고의적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피고의 위 주장을 수익자의 선의 항변으로 보아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 즉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근거한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F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G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및 시멘트벽돌조 3층 다세대주택

1층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59.455㎡

2층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59.455㎡

3층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59.455㎡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59.45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중구 F 대 122.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48.65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150분의 37.5

끝.

1) 그 당시 위 부동산은 소외 C에게 사실상 유일하게 적극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다.